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02
----------	-------

발의연월일 : 2026. 5. 8.

발 의 자 : 이건태 · 한준호 · 박희승
박균택 · 박성준 · 전현희
김동아 · 양부남 · 서영교
진선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 여성, 장애인 및 비수도권 창업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이 법률상 개념으로 정의되고 관련 법령에서도 그 육성과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은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녹색기술 창업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5호 신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생 략)</p> <p>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대할 수 있다.</p> <p>1. ~ 4. (생 략)</p> <p><u><신 설></u></p> <p>③ · ④ (생 략)</p>	<p>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u>」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u>녹색산업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기업</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